

제2805호  
2021. 2. 1.

발행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편집인: 홍보 전 산 과 장 김 건 태  
전화: 3396-4955  
(<http://www.junggu.seoul.kr>)

선	기관의장
람	

# 구 보

● 자치법규

[입법예고]

제2021-65호 :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2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55 / FAX.(02)3396-9022/3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람												
----	--	--	--	--	--	--	--	--	--	--	--	--



자 치 법 규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1-65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릴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월 2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0년 7월 2일자로「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우리 구 관련 조례에 반영하여 서울중구사랑상품권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맹점의 등록

-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및 가맹점 등록 거부 업종에 대해 규정

나. 가맹점 등록의 취소

- 가맹점 등록 취소 기준 규정 및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경우 홈페이지에 공개

다. 판매대행점 준수사항

- 전자식 지역화폐 소지자가 100분의 60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할인비율만큼의 금액을 제외하고 환급

라. 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 판매대행점 협약 체결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공개
- 판매대행점은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 관리

3. 의견제출

이 조례 및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전통시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 : lemnala@junggu.seoul.kr

2)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전통시장과

3) 전 화 : 02-3396-5044 (팩스 : 02-3396-8680)

붙임 :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중구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1호, 제3호, 제6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구 지역화폐”(이하 “지역화폐”라 한다)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구청장 또는 가맹점(이하 “지역화폐 발행자등”이라 한다)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지역화폐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3. “판매대행점”이란 구청장과 제9조의2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화폐의 보관·판매·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6. “가맹점”이란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지역화폐의 발행 및 판매)** ①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지역화폐의 보관·판매 및 환전업무를 관내 금융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판매홍보, 가맹점 관리 등의 업무를 가맹점 주로 구성된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④ 구청장은 지역화폐의 발행 및 운영, 시스템유지보수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⑤ 구청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탁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제1항과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지역화폐의 종류 및 유효기간) ① 지역화폐의 종류는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 또는 모바일형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의 종류도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지역화폐 소지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③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지역화폐의 권면금액은 1만원권, 5만원권, 10만원권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의 제목 “유통범위”를 “유통”으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유통) 지역화폐의 유통지역은 중구 관내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통 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의 제1항 번호를 삭제하고 “지정”을 “등록”으로 하고, 제2항을 삭제한다.

제6조(지역화폐 사용대상) 지역화폐는 구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대상 중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사업자
2.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와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행위자
3. 제1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중구청(출차·출연기관 포함) 및 중구청의 업무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또는 구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제7조의 제목 “가맹점 지정 및 취소”를 “가맹점 등록”으로 하고,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항을 삭제한다.

제7조(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별지 제1호 서식의 가맹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이는 운영대행사를 통한 가맹점 신청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또는 유흥주점영업
3.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 업종으로서 구청장이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그 밖에 가맹점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구청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을 등록한 경우
- 2.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3. 제8조에 따른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구청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가맹점 준수사항)**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이유 없이 상품권의 결제를 거절하거나 지역화폐 사용자를 현금거래자와 차별하는 행위
- 2. 다음 각 목의 지역화폐를 환전하거나 판매대행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화폐
  -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지역화폐
  - 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조제1호에 따른 복권 및 타 상품권 등의 판매를 통하여 수취한 지역화폐

**제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판매대행점 준수사항)**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판매대행점은 지역화폐의 보관·판매·충전 및 환전 업무를 수행하며 지역화폐의 분실 등 위탁업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 ② 판매대행점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담당공무원이 지역화폐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사업을 수행함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판매대행점은 지역화폐의 보관·관리 등에 대해서는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및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⑤ 판매대행점은 법 제10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전자식 지역화폐 소지자가 권면금액의 100분의 60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할인비율만큼의 금액을 제외하고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발행하는 지역화폐의 경우, 잔액환급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⑥ 판매대행점은 운영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⑦ 판매대행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1.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 2. 통계작성 및 판매분석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9조의2(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① 구청장은 관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지역화폐의 판매·보관·충전·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④ 판매대행점은 지역화폐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0조(운영대행사 준수사항)** ① 운영대행사는 발행, 결제, 환불 등의 자료의 수집, 분석 등을 통한 지역화폐 운영과 관련된 제반 자료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② 운영대행사는 지역화폐 운영시스템이 항상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시스템 구축 시 다른 사업과의 연계를 위한 확장성을 갖추어야 한다.
  - ③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계약서 및 협약서, 부속 합의서에 정한다.
  - ④ 운영대행사는 구청장으로부터 지역화폐의 운영에 따른 발급현황, 판매실적 등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운영대행사는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일정한 주기로 자료를 백업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⑥ 운영대행사는 운영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⑦ 운영대행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1.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 2. 통계작성 및 판매분석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0조의2(운영대행사 선정 및 협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역화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적합한 기술을 가진 업체에 대행 및 위탁할 수 있다.

1. 지역화폐의 발행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업무
  2. 지역화폐 관련 시스템 유지·보수 등에 관한 업무
  3. 가맹점의 관리 및 교육·홍보 등에 관한 업무
  4. 지역화폐 인식개선과 이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지역화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업무
- ② 위탁의 절차 및 운영대행사에 대한 지위·감독 등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0조의3(운영대행사 선정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제10조의2에 따라 대행한 업무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한 것이 인정될 때에는 운영대행사의 선정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써 운영대행사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될 때에는 해당 운영대행사는 구 지역화폐 운영과 관련된 제반의 자료를 구청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자에게 사업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성실히 인계하여야 한다.

**제11조 중 “지류형 지역화폐”를 “지역화폐”로 하고 제4항을 삭제한다.**

- 제11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지역화폐를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다.
1. 지역화폐가 훼손되어 지역화폐 권면 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구청장이 발행한 지역화폐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지역화폐가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 ③ 사용자는 지역화폐를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환전청구 및 환전)** 모바일 지역화폐의 경우 개별 가맹점의 환전한도는 월 5천만원으로 한다. 단,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역화폐 정산한도 상향을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지역화폐 구입 및 할인·수수료·인센티브 제공 방법)** ① 지역화폐는 현금 또는 체크카드로 구입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지역화폐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의 발행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지역화폐를 할인하여



판매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재난발생,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이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과의 연계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인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지역화폐 할인구매는 개인의 경우 월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인 및 가맹점 상인의 경우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 ③ 인센티브는 판매대행점에서 지역화폐 구매자에게 제2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 ④ 지역화폐 할인판매에 따른 손실 금액과 카드판매 수수료는 구청에서 보전하며, 판매대행점 및 운영대행사와 협의를 통하여 지급한다.

제14조 제2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지역화폐 활성화 시책)

- ② 구청장은 가맹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구청장은 지역화폐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 지급하는 각종 수당 및 시상금, 맞춤형 복지점수, 인센티브(추가충전, 캐시백 등을 포함한다)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으며, 지역 내 소상공인 보호 및 소비촉진을 위하여 지역화폐 사용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의 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재난발생,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이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과의 연계
  2. 국가시책 반영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16조 제4호부터 6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6조(중구 지역화폐 운영위원회 설치)

4. 운영대행사 선정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5.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조치에 관한 사항
6. 지역화폐 가맹점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중구의회 의원
  2. 지역화폐 업무 담당 실·국장
  3. 소상공인 지원 관련 관련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학회, 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복지분야 전문가 및 유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지역화폐 분야의 전문가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 등)** 위원 위촉 해제, 제척, 기피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소속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중구 소속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과태료 부과)**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위반행위별 부과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와 같으며,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20조(환수 조치)** 구청장은 가맹점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역화폐 할인액 등 부당이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1. 가맹점이 제8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2. 사용자가 제11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2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상법」 및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제2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화폐의 발행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부터 제3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맹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 규정에 따라 가맹점을 등록한 자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운영대행사·판매대행점의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 규정에 따라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을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 협약을 한 것으로 본다.



